##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7

발의연월일: 2020. 7. 16.

발 의 자:김교흥·맹성규·이성만

정일영 · 정정순 · 김경만

허종식 • 유동수 • 박찬대

신동근 • 이학영 • 유관석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은 생활의 필수재로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취득하여 안정된 주 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하지만,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 이 팽배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택거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택 취득시 1년 이내에 실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11조제5항 및 제20조제5항 신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8호의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추가 과세의 구체적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취득세를 납부한 후 제11조제5항에 따른 상시 거주를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추가 납부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을 취득한 사람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주민
		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8호의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u>&lt;신 설&gt;</u>		⑥ 제5항에 따른 추가 과세의
		구체적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
제20조(신고 및 납부) (	1 ~ 4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취득세를 납부한 후 제11조
		제5항에 따른 상시 거주를 하
		지 아니하여 취득세 추가 납부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 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 에 제11조제5항의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 고 납부하여야 한다.